

『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부담금별 운영 실적, 회계별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
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담금을 관리하고자
이를 개정하려 합니다.
-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,
수도원인자부담금, 광역교통시설부담금, 교통유발부담금,
주택재건축부담금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
부과하고 있으며,

2018년 부담금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267억원, 특별회계 3,781억원으로 총 4,048억원에 이릅니다.

- 부담금 징수 실적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금 운용종합계획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있어 집행부와의 정보 비대칭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입, 세출에의 감시와 견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